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. 5. 11 선고 2019가단27740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려

담당변호사 한상열

피 고 통영시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한

담당변호사 장민관

변 론 종 결 2021. 4. 6.

판 결 선 고 2021. 5. 11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위적으로, 피고는 원고에게 통영시 B 도로 370.6㎡ 중 별지 도면 표시 2, 7, 8, 9, 10, 4, 3,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A) 부분 93㎡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994. 10. 17. 접수 제302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 예비적으로, 피고는 원고에게, 통영시 B 도로 370.6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7, 8, 9, 10, 4, 5,

6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33.9㎡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994. 10. 17. 접수 제302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8,451,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5. 1.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1977. 4. 1. 분할 전 통영군 C 전 238㎡에 관하여 호주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, 위 토지는 1994. 10. 17. C 전 145㎡와 B 도로 93㎡로 분할되었다.

나. 피고는 1994. 10. 17. 위 B 도로 93㎡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(1992. 11. 30. 법률 제4502호, 실효, 이하 ‘특별조치법’이라 한다)에 의하여 보증인 D, E, F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1985. 3. 1.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(위 토지 취득 당시 통영군이었으나 1995. 1. 1.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피고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). 그 후 위 B 도로 93㎡는 2006. 3. 15. G, H, I, J 토지와 합병되고 2019. 5. 1.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그 면적이 370.6㎡로 변경되었다(이하 위 B 도로 370.6㎡를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.

다. 한편 K은 1994. 12. 29. 위 C 전 145㎡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보증인 L, E, D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1980. 10. 20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그 후 위 C 전 145㎡는 2019. 5. 1.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그 면적이 216.4㎡로 변경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호증,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포함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1) 주위적으로,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(A) 부분 93㎡에 관하여 증여하지 않았음에도, 피고가 허위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쳤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위 (A) 부분 93㎡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) 예비적으로, 피고는 위 (A) 부분 93㎡ 중 청구취지 기재 (가) 부분 59.1㎡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적법하게 증여받지 않았음에도 무단으로 지목을 변경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, 2019. 5. 1. 지적재조사를 통해 위 (가) 부분이 K 소유의 위 C 토지에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원고로서는 이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, 피고는 위 (가) 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 상실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있고, 위 (가)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(나) 부분 33.9㎡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,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

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

주장·입증하여야 하고,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며,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한다(대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5다2189 판결 등 참조).

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,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증인 F의 증언 및 원고 본인신문

결과만으로는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거나 피고 앞으로 마쳐진

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될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차진석

별지

도면

